

의안번호	제2009 - 6호
의결연월일	2009. 02. 25.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강창남 의원 외 1명
발의연월일	2009. 02. 16.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창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 ~ 6
------	----------

발의연월일: 2009. 02. 16.

발 의 자: 강창남·신주범(2명)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676호, 2007. 12. 14)됨에 따라 거창군의 평생교육진흥에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거창군 평생학습조례”에서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추진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나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평생교육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마.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하기 위한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바. 평생교육센터의 수행 사업과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및 평생교육센터 소속 하에 두는 거창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 조례 등 준용 규정을 둠(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1010추진단과 의견 수렴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③ 군수는 군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2장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평생교육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원·군의회 의원, 교육위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2.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3.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거창군평생교육센터

제11조(평생교육센터의 설치)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거창군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조직원 구성) 평생교육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군수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거창군평생학습관 운영) ① 평생교육센터 소속 하에 거창군평생학습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거창군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며 명예직으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평생교육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목적에 위배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 11. 15>

제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별료,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개정 2000. 11. 15>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15>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신고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15>

1.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여부
2. 보조금 과다 정산 여부
3. 증빙서류 등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 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삭제 2000. 11. 15>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삭제 2000. 11. 15>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거창군 재무규칙 회계』

제1조 (통칙) 군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8.14>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본청 실·과·단을 말한다. <개정 2008.8.14>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4.6.30 규칙 제 720호)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4.6.30 규칙 제 720호)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08.8.14>
-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8.14>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이하생략....